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6년 09월 06일
개정 1998년 01월 15일
개정 1998년 07월 03일
개정 2006년 10월 12일
개정 2010년 01월 22일
개정 2016년 08월 26일
개정 2019년 07월 01일
개정 2019년 09월 21일

제 1 조 (명칭)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식방식학회 정관 제4조(사업) 및 제7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본회의 사업중 학회지, 학회보, 간행물 및 도서의 기획과 발간 등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의 원고 수집, 논문심사, 편집 및 발간
2. 학술간행물의 기획과 발간
3.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에 발행하며, 판권란에 인쇄일자를 명시하도록 한다.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4 조 (구성)

1. 위원회는 편집담당 편집이사 및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담당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박사학위를 취득 후 관련 전문분야에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전문가(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의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제2조 각항의 사업을 기획하며, 실시한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① 학회지에 편집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의 제정과 개정
 - ② 학회지에 게재하는 투고논문, 해설, 자료, 총설, 전망 등의 선정과 심사 및 체재의 결정
 - ③ 본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기획과 발간
 - ④ 논문상 수상자의 선정
3. 업무 수행에 있어 경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시에는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1. (제정)본 규정은 1996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본 개정규정은 1998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본 개정규정은 1998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본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0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6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본 개정규정은 201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